

# 태백문화원 부설 태백향토사 연구소 운영 규정

제 정 2009. 3. 2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태백문화원의 정관 제4조, 제47조에 의거 본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써 운영하는 단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
**제2조(명칭)** 본원의 제4조 47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소로서 그 명칭을 태백문화원 부설 태백향토사연구소(이하 “향토사 연구소” 라 한다.) 라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발굴·수집·보존
2.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향토문화 정보·자료 등의 제공.
3. 향토문화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연합회, 기타 관련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.
4.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관련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.

## 제4조(연구위원 등)

- ①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둔다.
  1. 연구소장 1인
  2. 연구위원 10인 내외(소장 포함)
- ② 연구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③ 연구위원은 향토사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연구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## 제5조(연구위원의 임기)

- ①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## 제6조(간사)

- ① 연구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연구소 제반 사무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.
- ③ 간사가 확보될 때까지 사무국이 간사업무를 대행한다.

##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태백문화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